

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정회원 조지홍*

IMPLIED WARRANTY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Field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Ji-hong Jo* *Regular Member*

요 약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은 대부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부품을 공급받고, 이를 조립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많다. IT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지적재산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소송 혹은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혹은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 준거법상의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나, IT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적인 보증조항을 삽입할 수 없고, 각 준거법상으로도 소송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Key Words : CISG, UCC, Implied Warranty, IP, IT

ABSTRACT

Most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are companies which usually take parts from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and assemble the parts into a complete whole for big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ssue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is not the direct action or claim but the matter of contract concerning the 3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r the matter of each of the applicable law on the implied liability issues. Because bargaining power of the IT small businesses is not as big as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they can not receive explicit guarantees. Therefore,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should concern about this matter of contract.

I. 서 론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 경쟁 시대에서, 특히 IT기술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허기술 분쟁에 대한 연구가 최근 본격적으로 정부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분쟁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 및 분쟁 전략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이러한 분쟁 대응 매뉴얼 및 분쟁전략의 경우에는 분쟁

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초점을 맞추어 실무적인 내용들이 맞춤형으로 정리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쟁 대응 매뉴얼 및 분쟁전략의 경우에는 주로 직접적으로 특허권자(혹은 특허피물)로부터 제소를 당하거나, 클레임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특허권자(혹은 특허피물)로부터 IT 중소기업들이 직접 제소를 당하거나, 클레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IT중소기업의 고객사가 직접 특허권

* 삼성전기 주식회사 IP법무팀(jihong78.jo@samsung.com)

논문번호 : KICS2011-03-146, 접수일자 : 2011년 3월 14일, 최종논문접수일자 : 2011년 5월 11일

자(혹은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IT중소기업이 고객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보통신(IT)시장에서 IT중소기업들이 고객사에게는 상기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발생시,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모든 배상을 하겠다는 영업계약을 하고, 실제로 수급받는 큰 규모의 Core Chip 제조업체로부터는 아무런 명시적인 계약이 없거나, Core Chip으로 인한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에 대해서 배상조항 없이 부품을 수급하기 때문에, 수급된 부품으로 인한 지적재산 침해문제 발생시에도 부품 수급업체에게 아무런 보증 혹은 배상없이 고객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IT중소기업들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 침해문제는 고객사 및 부품수급업체와의 계약관계로 인한 문제, 즉, “계약상 제 3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Warranty”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상기 IT중소기업의 부품수급업체가 외국기업 경우에는 C.I.S.G.¹⁾(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고려해야 하며, IT기술과 관련된 부품수급업체가 미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U.C.C.²⁾(미국통일상법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상기 부품수급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을 고려하여, “계약상 제 3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사자간의 명확한 책임이 기술된 명시적인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른 계약위반의 문제가 되겠지만, IT업계에서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보증책임이 명확히 기술된 계약서 없이 일시적인 물품 구매요구(Product Order)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기 기술한 준거법을 어떻게 적용할 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각 준거법별로 Implied warranty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C.I.S.G.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

C.I.S.G.는 2005년우리 나라에서 발효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등 전 세계 76개국 이 가입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C.I.S.G.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보다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국가에 더 생소하며, C.I.S.G.를 잘 아는 변호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준거법으로서의 C.I.S.G.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C.I.S.G.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대한 Implied warranty(묵시적 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C.I.S.G. Article 42³⁾에 기술되어 있다. 권리하자중에서 그 권리가 지적재산권일 경우의 특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적재산권에 기한 제 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반적인 권리 하자책임(C.I.S.G. Article 41)에 비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완화시켜 주고자 한 조항이다. 제 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악의(매도인이 그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모를리 없었을 것)를 요구

3) C.I.S.G. Article 42

-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of which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provided that the right or claim is based on industrial property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goods will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f it was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the goods would be resold or otherwise used in that State; or (b) in any other case, under the law of the State where the buyer has his place of business.
- (2)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extend to cases where: (a)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 or claim; or (b) the right or claim results from the seller's compliance with technical drawings, designs, formulae or other such specifications furnished by the buyer.

1)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1980년 4월 11일 62개국이 만장일치로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이어 1988년 1월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동 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의 성립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동협약의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6개국이며, 이들 계약국은 전 세계 무역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http://www.cisg.law.pace.edu/cisg/countries/cntries.html> (2011.2.27 접속)

2) U.C.C. 미국통일상법전(美國統一商法典,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의 상법은 주마다 고유한데 주간 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통일상법전 혹은 연방통일상법전을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미국주중 유일하게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턴 특별구, 버진 아일랜드의 상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 판은 1987년도 판이다.

한다. 여기서 모를 수 없었을 경우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체결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후에 안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약체결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모두 물품이 어느 나라에 전매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 또는 사용될 나라의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C.I.S.G. Article 42 (1) (a)호). 또한 이러한 국가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C.I.S.G. Article 42 (1) (b)호).

만약 매수인이 상기 지적재산권이나 권리주장을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C.I.S.G. Article 42 (2) (a)호). 이 조항은 매도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에게 중과실 책임을 부과한 조항이다. 또한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적 지시등에 따른 결과로 제 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C.I.S.G. Article 42 (2) (b)호).

상기와 C.I.S.G. Article 42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Issue는 C.I.S.G. Article 42 (2) (b)호이며, 실무상에서는 C.I.S.G.를 근거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Indemnification을 받기 위해선, 매수인이 제 3자 권리 및 Claim에 대한 매도인의 중과실(Knowledge)을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서 상대의 중과실(Knowledge)를 입증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입증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C.I.S.G. 자체에 대해서 국내법 및 상황에 조화를 지나치게 신경써서 C.I.S.G. 자체를 국제적으로 통일적 해석 및 적용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들이 상기 C.I.S.G. 자체 적용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C.I.S.G. Article 43⁴⁾에는 매수인의 권리하자에 대

4) C.I.S.G. Article 43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1 or article 42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 (2)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ly on the

한 통지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매수인은 권리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권리하자를 특정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C.I.S.G. Article 43 (1)항). 여기서 통지는 발신주의원칙에 의하며,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았거나 늦게 통지 하였거나 또는 하자를 특정하지 않은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하자에 기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매도인이 권리하자와 그 성질을 이미 알고 있었던 때에는 매수인의 하자통지가 없었음을 원용하지 못한다(C.I.S.G. Article 43 (2)항). 따라서 이때는 매수인이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권리하자에 기해 주장할 구제수단을 모두 행사 할 수 있다.

III. U.C.C.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

C.I.S.G.의 가입 및 비준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C.I.S.G.와 U.C.C.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C.I.S.G.가 Preemptive Power를 갖기 때문에 U.C.C.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 기업의 미국법인과 부품제조 기업인 미국업체인 경우 적용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C.I.S.G.적용요건 검토후에 U.C.C.를 적용하여야 하겠다.

U.C.C.상에 Implied warranty는 U.C.C. § 2-312⁵⁾에 기술되어 있으며, 조항 내용에서 적용요건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Unless otherwise agreed” 내용과 같이 별도의 다른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을 경우에 본 U.C.C.상에 Implied warranty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 내용에 따른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두번째로 매도인이 “merchant regularly dealing in goods of the kind”이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러한 merchant는 적어도 매수인보다는 제 3자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파악에 있어서 더 나은 위치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he knew of the right or claim of the third party and the nature of it.

5) U.C.C. § 2-312 (3) Unless otherwise agreed a seller who is a merchant regularly dealing in goods of the kind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free of the rightful claim of any third person by way of infringement or the like but a buyer who furnishes specifications to the seller must hold the seller harmless against any such claim which arises out of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미 연방법원은 상기 merchant를 retail dealers, wholesalers, and product manufacturers가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있다⁶⁾. 세번째로는 “goods were subject to a rightful infringement claim of any third party upon delivery”를 만족을 해야 한다. “the rightful claim”는 매수인이 제품의 판매/제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불리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제 3자의 지적재산 침해에 의한 소송을 requirement로 하지는 않지만 하찮은 수준의 claim (Frivolous clai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네번째로는 “the buyer did not furnish specifications to the seller” 내용으로 Buyer가 Seller에게 Specification (Ex. 도면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제공한 Specification으로 인한 Claim의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hold harmless”하여야 한다.

C.I.S.G.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권리하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⁸⁾.

- 6) Paul E. McGowan, Strategies for Indemnification under the UCC Against Claims of Patent Infringement, *Intell. Prop. Litig.*, Winter 2010, at 6
- 7) In California, a rightful infringement claim exists when there is “a non-frivolous claim of infringement that has any significant and adverse effect, through the prospect of litigation or otherwise, on the buyer’s ability to make use of the purchased goods.” *Phoenix Solutions*, 637 F. Supp. 2d at 696 (citing *Pacific Sunwear of Cal., Inc. v. Olaes Enters., Inc.*, 167 Cal. App. 4th 466, 482 (Cal. App. 2008)).
- 8) U.C.C. § 2-607. Effect of Acceptance; Notice of Breach; Burden of Establishing Breach After Acceptance; Notice of Claim or Litigation to Person Answerable Over.
 - (1) The buyer must pay at the contract rate for any goods accepted.
 - (2) Acceptance of goods by the buyer precludes rejection of the goods accepted and if made with knowledge of a non-conformity cannot be revoked because of it unless the acceptance was on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the non-conformity would be seasonably cured but acceptance does not of itself impair any other remedy provided by this Article for non-conformity.
 - (3) Where a tender has been accepted (a) the buyer mus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discovers or should have discovered any breach notify the seller of breach or be barred from any remedy; and (b) if the claim is one for infringement or the like (subsection (3) of Section 2-312) and the buyer is sued as a result of such a breach he must so notify the selle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receives notice of the litigation or be barred from any remedy over for liability established by the litigation.
 - (4) The burden is on the buyer to establish any breach with respect to the goods accepted.

매수인은 제소당하거나, 또는 소송에 따른 재제조치가 발생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상기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여야 한다(U.C.C. § 2-607 (3)(b)).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할 수 있고, 매도인이 방어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매수인이 breach of warranty등으로 피소된 (1)소송과 추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할 (2)소송에서의 공통된 Fact에 대한 (1)소송의 결정에 추후 (2)소송에서 구속된다 (즉, 매도인이 지금 진행되는 소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추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C.C. § 2-607 (5)(a)).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원한다면, 매도인은 소송에 대해서 방어할 특권을 가진다(U.C.C. § 2-607 (5)(b)).

U.C.C.의 Implied warranty와 같은 경우에도 C.I.S.G.와 차이점은 있지만, Indemnification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많은 입증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 자체도 부담일 뿐 아니라 소송비용 및 절차의 부담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 민법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우리나라도 C.I.S.G.의 가입 및 비준국이므로 앞서

- (5) Where the buyer is sued for breach of a warranty or other obligation for which his seller is answerable over (a) he may give his seller written notice of the litigation. If the notice states that the seller may come in and defend and that if the seller does not do so he will be bound in any action against him by his buyer by any determination of fact common to the two litigations, then unless the seller after reasonable receipt of the notice does come in and defend he is so bound. (b) if the claim is one for infringement or the like (subsection (3) of Section 2-312) the original seller may demand in writing that his buyer turn over to him control of the litigation including settlement or else be barred from any remedy over and if he also agrees to bear all expense and to satisfy any adverse judgment, then unless the buyer after reasonable receipt of the demand does turn over control the buyer is so barred.
- (6)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3), (4) and (5) apply to any obligation of a buyer to hold the seller harmless against infringement or the like (subsection (3) of Section 2-312).

서 C.I.S.G.와 U.C.C.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C.I.S.G.가 Preemptive Power를 갖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고찰해보면, 민법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려우며, 실제 법조문도 정확히 없는 상황이므로, 법조문에 따른 논리적 추측만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첫번째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⁹⁾으로 구성할 수 있다. 권리 하자(제 3자 지적재산 침해)가 있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하자 담보책임을 이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 제 575조 1항에 따라서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 제 582조에 따라서, 매수인은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¹⁰⁾.

두번째로는 우리나라 민법^{750조}¹¹⁾에 의해서 제 3자 지적재산 침해가 가능한 물품을 매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매수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인해 제 3자 지적재산 침해가 발생하여, 제 3자로부터 Claim 혹은 제소를 당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나라 민법^{390조}¹²⁾에 의해서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3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법조문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T중소기업입장에서 명시적인 계약이 없고 부품수급업체가 국내기업일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가 앞서 다루었던 C.I.S.G. 혹은 U.C.C.에 근거한 배

상요구처럼 명확하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배상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 라는 것이 분명치 않아 업체들간에 분쟁소지가 더 커져 문제라고 생각된다. 민법조문이든 특허법조문이든지 법조문 개정이 있을 경우에 상기 “제 3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앞서 언급하였던 명확한 계약이 없을 때,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묵시적인 보증책임의 경우에 준거법별로 차이가 있지만, IT중소기업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C.I.S.G., 우리나라 민법 혹은 U.C.C.의 Implied Warranty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부품수급업체가 보상을 안 할 경우에는 각 준거법에 근거하여 소송해야 하는데, 소송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시, 배상받을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소송규모에 따라서 절차에 따른 대리인 비용 혹은 수수료등 자체가 배상받을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특히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특허기술 분쟁에 대한 연구를 정부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 표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정부산하기관들이 충분한 연구를 하여, 묵시적 보증시 부품수급업체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상 조문을 신설 및 변경하거나, 정부차원의 IT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IT 중소기업이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계약서 표준화, 명문화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IT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분쟁보다는 간접적인 배상책임, 즉 계약문제에 따라서 IT중소기업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Risk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전까지는 각 IT중소기업들은 원칙적으로는 부품수급업체와 거래를 명문화, 표준 Indemnification 조항을 삽입된 거래계약을 하여야만 하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특허보증계약(간이 계약) 혹은 특허보증 Letter등을 받든지, 혹은 일시적인 물품 구매요구(Product Order) 문서에 표준화된Indemnification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9)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1)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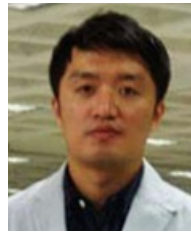
- [1]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2006).
- [2] 김선국, 국제물품매매협약과 미국계약법, 국제거래법연구(2004).
- [3] 최홍섭, 유엔통일매매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인하대출판부(1997).
-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2005).
- [5] Bruno Zell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 leap forward towards a unified international sales laws(2000).
-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출처.
- [7]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s,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Oxford (2005).

- [8] Paul E. McGowan, Strategies for Indemnification under the UCC Against Claims of Patent Infringement, Intell. Prop. Litig(2010).
- [9] James J. White &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1995).
- [1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2007).
- [11]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1996).

조 지 흥 (Ji-hong Jo)

정회원



2001년 2월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2006년 7월 아주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
2004년 8월~현재 삼성전기 IP 법무팀 재직
<관심분야> 통신표준특허, 라이선스, 보증책임